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경찰 영상녹화제의
재조명과 개선방안**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경찰 영상녹화제의
재조명과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경찰연구관 김 지 환

목 차

I . 서론	1
II . 영상녹화제의 가치와 재인식	3
1. 영상녹화제의 가치	3
가. 조서재판과 형사사법개혁의 추진	3
나. 영상녹화제도 도입의 의의	4
2. 영상녹화 방식의 도입과정	6
가. 영미법계	6
나. 우리나라	9
다. 소결	10
3. 영상녹화의 형사소송법 하의 가치와 재인식	11
가.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영상녹화물의 가치	12
나. 영상녹화 가치에 대한 재인식 필요	14
III . 영상녹화의 효용성과 우려점	15
1. 영상녹화의 효용성	15
가. 수사과정에서의 효용성	15
나. 공판정에서의 효용성	19
2. 영상녹화에 대한 우려점	21
가. 수사과정에서의 우려점	21
나. 공판정에서의 우려점	24
IV . 영상녹화제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	25

1. 운영 현실	25
가. 관련근거	25
나. 영상녹화 실행개관	28
다. 관리실태	29
2. 실무상의 문제점	29
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의 미비	29
나. 이중 조서 작성 문제	31
다. 관리 상의 문제점	32
라. 수사관들의 인식	33
V. 영상녹화제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33
1. 녹음제의 전면 실시와 선별 영상녹화제의 도입	34
가. 의무적 녹음제 실시	34
나. 녹화 대상범죄에 대한 고찰	36
2. 영상녹화제에 대한 지침 등의 제정	39
가. 단계별·상황별 지침	39
나. 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시스템 마련	44
3. 조서 작성 방식에 대한 개선	46
가. 진술요약서 방식의 필요	46
나. 기관간 공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47
4. 수사관 교육 및 연구개발	49
가. 영상녹화 및 신문기법의 교육필요	49
나. 영상녹화 관련 연구활동의 필요	50
VI. 결론	51
참고문헌	53

1. 국내문헌	53
2. 외국문헌	55
3. 기타 자료	55

<표 차례>

<표 1> 녹음·녹화제가 가장 적합한 범죄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35
<표 2> 영상녹화 대상범죄	36
<표 3> Code of Practice F 의 개관	40

I. 서론

2007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기존에 경찰과 검찰 양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던 영상녹화¹⁾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게 된다. 법 개정 전, 이미 수사기관들은 수사에 있어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추진하였고, 시범 실시와 선진외국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영상녹화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영상녹화에 대한 규정은 그 제도의 본래적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만한 것이었으며, 법정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수사기관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법정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²⁾

공판중심주의의 전격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영상녹화물에 대한 가치는 이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서면조사 방식의 수사와 그 결과물들은 공판중심주의의 도입과 함께 도태될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영상녹화를 통한 수사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현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속에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 있어

1) 현재 경찰에서는 ‘진술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상 ‘영상녹화’로 표현되어 있어,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 ‘영상녹화’로 표현함. 하지만, ‘녹음·녹화’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영민, 박노섭의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6-07, 70-71면 참조.
2) “법무부,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물 증거로 인정 추진”, 중앙일보 2010. 6. 28.

서의 영상녹화의 가치를 재조명 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초점으로 아래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면조서를 통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법 개혁, 그리고 영상녹화제도의 의의와 도입과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영상 녹화제도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상녹화제도의 효용성과 우려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경찰의 영상녹화제도 관련 운영실태³⁾와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상녹화제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선행 연구들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여부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 문헌들과 관련 외국 논문 및 영상녹화에 관련된 규정들을 참고하였다. 부족하나마 이 글이 우리경찰의 공정한 수사발전을 위한 영상녹화제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영상녹화 조사가 아동 및 성폭력의 경우와 특히 관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수사·형사 분야에서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Ⅱ. 영상녹화제의 가치와 재인식

1. 영상녹화제의 가치

가. 조서재판과 형사사법개혁의 추진

우리나라의 서면조사의 형식을 통한 수사와 이를 중심으로 한 재판의 시작은 일제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는 재판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보다는 형사처벌을 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인들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 통역을 통해 피고나 증인 등의 진술을 상세히 들어보고 진실규명을 노력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본 순사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의해 효율적으로 판결하고 처벌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⁴⁾

현재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구조 속에서도 이런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재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검사는 공소장조차 낭독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묵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5분 남짓 형식적인 심리를 토대로 몇 주후에 피고인들을 다시 불러놓고 1분 간격으로 재판을 선고하는 마치 컨베이어에서 줄줄이 통과자를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판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법관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

4) 이기수, “경찰관 법정증언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4면.

류에만 의존해서 심리하는 조서재판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무제한적인 증거가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판단이 공개법정의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법관의 집무실에서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재판부와의 인맥이나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과 함께 형사사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시작된 사법개혁작업은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으로 본격화 되었고, 이의 체계적 완수를 위해 2005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를 구성하게 된다. 사개추위의 활동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도의 도입, 국선변호제도 개선, 인신구속제도 개선,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공판중심주의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되었고,⁷⁾ 이와 함께, 형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바로 영상녹화제도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것과 같이 영상녹화 제도는 그 도입과정 측면에서 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 달리, 재판상의 증거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조서관련 규정의 개혁 시도는 오히려 퇴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⁸⁾

나. 영상녹화제도 도입의 의의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법 규정과 관련된 사개추위와 국회의

5) 이기수, 앞의 글, 5면 (이동희,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2007 가을, 통권 제3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7, 738면 재인용).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642면.

7) 박노섭, “개정형사소송법상 조서재판위험성에 대한 소고”, 경찰학연구, 경찰대학교, 2007, 1면.

8) 박노섭, 앞의 글, 5-6면.

개정 논의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⁹⁾을 보이면서 제244조의2에서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를, 제221조에서는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하여 각 규정함으로써 영상녹화 제도를 도입하였다.¹⁰⁾

영상녹화조사(녹음·녹화조사)란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 비디오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CD, DVD 등)로 녹음·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¹¹⁾¹²⁾ 이런 영상녹화제도는, 피의자의 진술을 전달함에 있어 그 신문의 폐쇄성과 조사자의 선입견 등 그 의도에 따라 진술의 누락이나 왜곡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고문이나 협박 등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해 억제 가능성이 낮은 서면조사 방식과 달리, 신문(訊問)의 과정을 그대로 녹음·녹화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사단계의 진술을 가감없이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개정을 통해 그간 수사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던 변호인참여제도를 규정¹³⁾하였으나,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제한 규정상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9) 자세한 논의과정은 천진호 교수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입법연혁적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협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참고.

10) 천진호,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입법연혁적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협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2009, 281면.

11) 백승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07, 10면.

12) 수사기관 이외의 사람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해 놓은 기록물은 영상녹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별도로 ‘비디오테이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형소법 제292조3) : 신동운, 앞의 책, 974면.

1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직도 높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실제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¹⁴⁾을 감안한다면, 피조사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보장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 녹화는 단지 공판중심주의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혁을 가져올 중요한 수사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영상녹화 방식의 도입과정

가. 영미법계

영국의 경우는 일찍이 1960년대 피의자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의 도입이 제창되었으나, 수사기관인 경찰의 반대로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70년대 말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Confait 살인사건, Guildford Four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테이프 녹음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후 형사절차에 관한 왕립위원회가 구성되어, 테이프 녹음방식의 조사에 대한 시험실시를 하게 되었으나 각계의 혹평 속에 실시되지 못하다가, 1983년 실시한 시험실시에 이르러서야 수사관들도 녹음방식의 가치를 신뢰하게 되고, 이 제도로 인한 수익자가 되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의 호평을 받게 된다.

그 후, 1984년 피의자의 유치 및 신문(Interview, 조사) 등을 적정화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서 경찰및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약칭 PACE)을 제정하게 되고,¹⁵⁾ 이 PACE에 기초하여 1988

14) “경찰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율 0.07%”, 세계일보 2008. 10. 13.

년 피의자신문의 녹음에 대하여 규정한 실무규범 E(Code of Practice E : Code of Practice on Recording of Interviews Suspects)를 제정하게 되면서, 피의자신문에 대한 테이프녹음 방식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1992년부터는 테러범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신문과정에 있어 신문의 전(全)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있으며,¹⁵⁾ 신문을 영상녹화하는 제도는 1989년부터 시범실시되었고, 2001년 형사사법및경찰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에 시행에 따라 2002년부터는 비디오녹화에 관한 실무규정 F(Code F)에 의해 영상녹화제도가 실시되고 있다.¹⁷⁾

미국의 경우는, 미란다판결의 선고 이후, 미란다 원칙에 따른 절차상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영상녹화제도가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¹⁸⁾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¹⁹⁾로 영상녹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영상녹화제도의 효시는 Alaska 주로 알려져 있다. Alaska 주 대법원은 구속 상태하의 피의자를 신문할 때 이를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권고하거나, 신문과정의 영상녹화는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미란다권리의 포기가 적법한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판결들을 내리게 된다.²⁰⁾ 가장 대표적인 판결은

15) 이동희, “사개추위안의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507면.

16) 이동희, 앞의 글, 508면.

17) Code F는 Code E의 절차 및 내용이 유사하며, 비디오녹화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임. : 이동희, 앞의 글, 508면.

18) 김현숙,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8, 130면.

19) 성문법이나 주 대법원 판례를 통한 권고 등에 의해 성립됨.

20) mallott v. state, 608 P.2d 737, 743 n. 5(Alaska 1980), S.B. v. State, 614 P.2d 786(Alaska 1980), McMahan v. State, 617 P.2d 494(Alaska 1980), (탁희성·백광훈, “수사상 녹음·녹화자료의 증거능력 부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용역과제, 2003, 56

Stephen 판례로, “구속 중 신문에 대한 전자적 기록이, 면책될 수 없는 이유로 실패한 경우에는 Alaska 헌법 하에 적법절차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따라서 이 경우의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함²¹⁾으로써, 사실상 구금상태하의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기관의 의무적 영상녹화를 규정지었다. 이후 Minnesota 주에서도 1994년 같은 취지의 판결²²⁾을 내리게 된다.

연방차원의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각 주에서는 입법이나 판례법, 또는 수사기관의 자율적 판단 하에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나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신문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는 것이며,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영상녹화 없이 이루어진 자백에 대해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규정 사항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도입 초기 당시, 피의자의 자백거부나, 수사관들의 실수노출에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사기관의 많은 저항이 있었으나, 제도의 실시 후, 오히려 열광적인 지지 하에 제도가 안착되어 운용 중에 있다고 한다.²³⁾

정리해 보면, 영국과 미국 모두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자백 내지 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법원이나 변호사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지적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초기의 수사기관의 반대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수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호응을 얻으며, 영상녹화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 재인용.)

21) 탁희성·백광훈, 앞의 글, 56-57면.

22) State of Minnesota v. Michael J. Scales, 518 N.W.2d 587, Supreme court of Minnesota (1994), (탁희성·백광훈, 앞의 글, 53면 재인용.)

23) 경찰청 수사과, “선진외국의 진술녹화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07, 15-16면.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은 1998년 서울 남부경찰서(현 서울금천경찰서)를 시범경찰서로 지정하여 피의자 신문에 대한 비디오녹화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당시 도입취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과정에 대한 강압수사논란을 해소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비용문제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다가,²⁴⁾ 2004년 초부터 검찰과 경찰측 실무자 선에서 모임을 갖고 본격적으로 영상녹화의 도입방안을 연구하게 된다.²⁵⁾ 그러던 중, 2004년 12월 16일 대법원은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던 이전의 판례태도를 변경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및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자신이 수사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추기관인 검사는 이에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는 불합리한 증거법”이라고 맹비난을 가하였다²⁶⁾.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변화로 인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소송법 개정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는 법원, 검찰, 변호사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던 경찰까지 참여하게 대립하는 항목이 된다.²⁷⁾

이런 상황 속에서, 2005년 1월 18일 발족한 사개추위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증거법의 개정을 추진하

24) 박노섭·이용혁, “수사절차상 진술녹화제 도입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5, 34-35면.

25) 검찰은 2002년 5월 수사과학화 계획의 일환으로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2003년 4월 전자조사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실시함. : 박노섭, 이용혁, 앞의 글, 36면.

26)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호, 대검찰청, 2007.6, 19-20면 (김현숙, 앞의 글, 51면 재인용.)

27) 김현숙, 앞의 글, 51면.

게 되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판단하고, 그 보완책의 하나로 영상녹화제도를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검찰도 처음에는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사개추위의 개정방향이 힘을 얻자 영상녹화제라도 도입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라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²⁸⁾

한편, 경찰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추진 속에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수사권조정을 앞둔 경찰과 검찰간의 대립각이 심화된 탓으로 검찰이 주도하는 영상녹화 방식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때 ‘수사과정의 진술녹화제 도입계획(안)’이 보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수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이미 확보된 예산 등으로 2006년 9월 영상녹화제도 도입이 최종 확정되면서, 서울 양천경찰서를 시범실시처로 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²⁹⁾ 이후, 2007년에는 전국 404개 조사실을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다. 소결

우리나라의 영상녹화조사 제도 도입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과 미국 등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외국의 경우,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나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이나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문제제기로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주도하에 도입된 사실이다.

28) 이동희, 앞의 글, 503-504면. : 당시 검찰은 조서능력의 전면적 폐지방향의 개정에 대해 집단행동을 통해 반발하며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은 곧 검찰수사의 폐지로 이어진다고 주장함.

29) 나영민·박노섭,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6-07, 115-116면.

이러한 차이는 외국과는 다른 형사사법제도 및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의 측면이라는 본질적 이유 외에,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엿보이며,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함으로써 검찰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³⁰⁾ 여기에 시민단체 등은 영상녹화물의 도입을 반대하고,³¹⁾ 법원 또한 업무가 중 등의 이유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사개추위에서 처음 제시하였던 그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사개추위안 제312조의2³²⁾)은 삭제되는 한편,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의 부여를 위해 영상녹화물이 이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오히려, 서면조서를 이용한 재판의 구조는 그대로 남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다분히 각 기관간의 권력 싸움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잃고 만 결과로 평가된다.

3. 영상녹화의 형사소송법 하의 가치와 재인식

가.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영상녹화물의 가치

30) 박노섭·이용혁, 앞의 글, 39면.

31) 참여연대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에 매우 우려할 만한 조치라고 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 백승민, 앞의 글, 11면.

32) 사개추위안 제312조의2(피의자 진술에 관한 영상녹화물)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일정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그 조사에 참여한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의 진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07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영상녹화물이 가지는 법률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둘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셋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보조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규정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법률 제9765호, 2009. 6. 9, 일부개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이하 생략)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①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이 ‘조서에 대한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입증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렸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³³⁾, 영상녹화물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되살려 놓게 되는 도구가 되었고,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인 제318조의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녹화물은 다른 전문진술과 달리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판정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부인할 시 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공판정 현출도 아닌, 피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케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종전의 내용에 비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하여 조서 재판의 폐지라는 원래의 목표에서 크게 후퇴한 셈이 되었다.³⁴⁾ 또한 이는 법원은 영상녹화물을 공판정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음을 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검사의 조서 증거채택을 위한 도구 외에는 사실상 그 사용 가치가 없도록 된 상태이다. 물론, 공판중심주의의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³⁵⁾ 피고인의 기억보조와 모순진술시 탄핵증거로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⁶⁾

33) 박노섭, 앞의 글, 4면.

34) 김봉수,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한국형사법학회, 2008. 9), 172면; 변종필,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형사법학회, 2007. 9); 신양균,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8. 5), 144면(천진호, 앞의 글, 291면 재인용.)

35) 이와 관련,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에 따르면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의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또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노섭, 앞의 글, 12-13면.

36) 박노섭, 앞의 글, 14면.

나. 영상녹화 가치에 대한 재인식 필요

영상녹화제의 도입과 관련된 이 같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치의 퇴색은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검찰은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사법경찰의 경우 기존처럼 탄핵증거로 사용가능한 서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함으로써 수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³⁷⁾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상녹화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절차에서 수사절차에 투명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영미법계 국가에서 법원과 변호인 측에서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의 억제와 기존 서면조사 방식에서의 수사관의 의도에 따른 진술왜곡 및 사법기관 편익적인 조서재판의 폐해를 바로잡을 우수한 제도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임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있으나, 증거능력 등의 법 규정에 얽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영상녹화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영상녹화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관 교육 등을 통해 경찰 영상녹화물의 가치를 스스로 높임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 공정한 수사방식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상녹화물이 갖는 가치를 되짚어보고, 일선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7) 박노섭, 앞의 글, 13-14면.

Ⅲ. 영상녹화의 효용성과 우려점

1. 영상녹화의 효용성

가. 수사과정에서의 효용성

1) 절차적 적법성의 담보와 반인권적 행위 통제

영상녹화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촬영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고문, 협박 등의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다양한 규정³⁸⁾에서 수사의 절차적 요건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수사현실에서는 절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고지로 머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의무 준수 등에 관한 다툼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녹음녹화하게 된다면 적법절차 규정의 준수는 월등히 담보될 것이며, 그 통제 또한 가능해 질 것이다.³⁹⁾

38) 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 부여, 조서의 열람과 오기 및 증감변경의 유무확인 등.

39) 이동희, 앞의 글, 521면.

한편, 수사기관을 포함한 범집행기관에게 자백의 획득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자백의 획득과정에서 불법·탈법적 유혹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까지도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⁴⁰⁾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하지만,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피의자의 자백은 명확한 증거의 확보와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다양한 피의자를 접하게 되고 때로는 강압적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고 싶은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⁴¹⁾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관의 그런 유혹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는 문제일 것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자백 획득과정의 위법성은 분명 엄격히 판단해야 할 가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피의자의 신문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 한다면 고문 등의 가혹행위 발생가능성을 대폭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2)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율적 수사가능

영상녹화 방식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측면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조서 작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사자의 진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사하는 수사관은 피의자의 표정, 몸짓 등을 보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여러 관점에서 달리

40) 서울 양천서 마약 피의자 고문 사건, 검찰 수사받던 경산 공무원 자살사건 등.

41) 독일의 경우 실례로 2002년 발생한 어린이 유괴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어린이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지 않자, 경찰관이 고문의 위협을 가하여 장소를 파악하고 어린이를 구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독일 내부에서 경찰관의 처벌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이다. 결국 경찰관들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하태훈, “미국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05, 2면.

42) 백승민, 앞의 글, 14면.

해석될 수 있는 언어진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의 가능성을 높여 진실 발견에 더욱 접근할 수 있다.⁴³⁾ 둘째,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행한 진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지게 된다.⁴⁴⁾ 이는 특히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의 경우, 그 현장성과 사건당시의 가장 근접한 신뢰도 높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상당시간의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피조사자가 진술을 왜곡 내지 반복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수사관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피조사자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근거 없는 비난행위로부터 수사관을 보호한다.⁴⁵⁾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민원제기를 남발하는 민원인들이 있고, 이들로부터의 민원제기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상녹화를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수사당시의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기억하기 위한 소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녹화실의 시스템적 우수성으로 인한 피조사자가 하는 사건관련 독백적 진술의 확보 등도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우수한 장점이라 하겠다.

3) 진술내용과 의미의 정확한 전달

피조사자의 진술내용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된다. 이는 서면조사 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조사자와 피조사자간 문답식 서면조사 방식은 사안의 왜곡과 함께 수정·생략 그리고 부연 해석되어 작성된다.⁴⁶⁾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43) 박노섭,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2004), 124면.

44) 백승민, 앞의 글, 14면.

45) 박노섭, 앞의 글, 125면.

46) Schmitz, Tatgeschehen, Zeugen und Polizei, 384, S. 399. Schmitz는 실험을 통해 심문상의 오류비율을 분석하였고, 이에 의하면 심문 후 기록시 약 25%정도의 아이템이 언급되

회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과 피의자가 공동으로 재구성하여 기록하는 것으로⁴⁷⁾, 이 과정 중에 조사자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조사 전에 미리 사건진행에 관한 그림을 머리 속에 그리고, 진술이 그림과 일치하면 조서에 기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 생략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조사자의 연상 속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적정선에서 일치하지 않게 될 때에는 사건의 진행에 대한 묘사는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기술하게 된다.⁴⁸⁾ 또한, 이런 핵심을 벗어난 진술은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서 작성시 경시되거나 아예 기록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잡한 내용의 진술은 간단명료한 진술로 변형하여 기록하게 되며 이는 가능한 한 깔끔하고 모순없는 사건의 진행의 묘사이기를 원하는 법원의 기대와도 일치한다.⁴⁹⁾ 이와달리, 영상녹화는 그 전 과정을 녹화함으로써 피의자가 선택한 의미의 전달을 수사관의 자의적, 비자의적 왜곡 현상없이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는 것이다.⁵⁰⁾

4) 수사 자료로서의 활용성

영상녹화된 기록물은 수사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 먼저, 영상녹화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사관은 자신의 수가기법 내지 진술청취기법의 향상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 서면조서 작성방식에 있어서의

지 않았으며 언급된 아이템 중 60%이상은 정확히 묘사되었으나, 13%는 잘못 묘사되었으며 약 7%는 부분적으로 잘못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섭, 앞의 글, 114면, 재인용)

47) 나영민·박노섭, 앞의 글, 64면.

48) Schneider, 앞의 논문 S, 254. (박노섭, 앞의 글, 114면 재인용.)

49) 박노섭, 앞의 글, 114면.

50)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피조사자의 어조나 억양 등이 그대로 기록됨으로써 감정적인 측면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는 그 진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정도의 신뢰성과 임의성을 부여할 것이다.

진술 청취는 진술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연할 수가 없기에 일회성의 조사로 끝나버리며, 수사관조차 자신이 작성한 조서를 보고 기억을 환기할 뿐, 실제 피조사자가 어떤 어투나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 알기 어렵다. 하지만, 녹화물이 남게 되면, 이의 재검토를 통해 자신의 수사기법 상의 문제점 내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조사자의 모습 등에 대해 추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런 결과물 등의 축적을 통해 수사기법의 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연구결과물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⁵¹⁾

나. 공판정에서의 효용성

1) 수사시의 발생사실에 대한 소모적 분쟁 배제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는 공판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경우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⁵²⁾

특히, 미국의 공판에 있어서도 영상녹화물의 사용은 유죄인정 사례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공판과, 전문진술에 대한 논쟁, 증거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를 관장해야만 하는 판사들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⁵³⁾ 우리나라

51) 영국에서는 1984년 PACE Act 를 통해 수사과정의 의무적 녹음제도를 도입한 후, 이에 따라 축적된 녹음자료들을 토대로, Baldwin 및 Williamson은 신문기법 등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김종률, “검찰수사역량강화 방안 - 검찰수사관의 수사 교육·평가·자격제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연수원, 2008, 16면.

52) 이동희, 앞의 글, 522면.

53) Thomas P. Sullivan, “RECORDING FEDERAL CUSTODIAL INTERVIEWS”,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2008, NO 4, p 1309,

의 판사도 진술의 녹음 내지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의 문제를 놓고 다툴 이유는 없을 것이다.⁵⁴⁾ 이와 관련 Thomas P. Sullivan 의 논문에 실린 한 판사의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원문의 필요성이 있어 그대로 기재함.)

"If you've got audio and video tape there, I think you ought to use it. I don't know why I have to sit here and sort through the credibility of what was said in these interviews when there's a perfect device available to resolve that and eliminate any discussion about it."

(출처 : Thomas P. Sullivan, "Electronic Recording of Custodial Interrogations : Everybody Win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05, p 1130.)

2) 공판중심주의 하에서의 가치

2012년 본격 시행될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하여 경찰의 영상녹화는 사건의 발생 직후 내지 피조사자의 기억이 비교적 생생할 때 이루어지므로 상당기간의 수사과정과 공판준비 등의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생각이 변질되는 것에 비해, 1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판에서도 판사나 배심원의 입장에서는 마치 현장에서 진술자가 진술하는 것과 동일한 진술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이는 시간적인 제한 없이 시각적·음향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피조사자의 진술을 제공해 줄 것이다.⁵⁵⁾

또한, 형사소송법 제316조⁵⁶⁾에서는 조사자 증언제도를 도입하여 피의

54) 실제, 필자가 2003년경 수사연수소에서 교육받던 중 서울고등지법에 방문하여 참관한 재판에서, 판사는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사실 여부를 문제로, 한참을 반복 질문하며 고생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5) 백승민, 앞의 글, 70-71면.

56) 제316조(전문의 진술)

자를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도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백을 포함한 피의자의 진술을 법정증언을 통해 법정에 현출하게 된 것이다.⁵⁷⁾ 경찰관이 법정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조사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다면 그 특신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며, 수사과정에 대한 메모나 기록의 내용보존을 정확히 하는 등의 조치보다는 모든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보다 높은 신뢰가치를 지닐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영상녹화에 대한 우려점

가. 수사과정에서의 우려점

1) 수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확보에 대한 우려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당시에 있어서, 영상녹화 관련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작가능성과 녹화 전에 가해질 수도 있는 피조사자에 대한 협박·회유·강요 등의 문제이다. 먼저, 조작과 관련하여서는 촬영자나 편집자의 일방적인 영향력이나 편집기법에 따른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나, 현재 영상물을 녹화하게 되면 생성되는 파일은 바로 백업데이터 장치에 전송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조사가 수사기관에 들어와서 수사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57) 이기수, 앞의 글, 12면.

고, 영상녹화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발생 문제는 사실 모두 녹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제가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과정의 기록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녹화를 하기 전 피조사자의 권리 고지 등을 함에 있어 녹화전의 회유,협박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나,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의 과정을 관리·통제할 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방법 등을 규정 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영상녹화를 할 경우 녹화화면 자체에서 피조사자의 표정이나 진술태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영상녹화 지침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규정하여 조사과정상의 투명성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2) 피조사자의 진술 억제 우려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두려워할 경우, 특히 진술을 거부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몇몇 혐의자의 경우 비디오 앞에서 심한 장애를 일으키고 또 몇몇 피의자는 카메라 앞에서의 진술을 거부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⁵⁸⁾

이에 반해, “비록 카메라의 존재가 몇몇 혐의자의 진술을 방해하나 이것이 비디오 신문을 반대할 정도로 큰 장애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⁵⁹⁾ 또한,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58) Barnes and Webster, "Police Interrogation : Tape Recording," Royal Commission on Criminal Procedure Research Study No. 8, HMSO, 1980. (박노섭,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2004), 130면 재인용.)

59) Mcconville and Morrell, Criminal Law Review, 1983 p. 159 (박노섭, 앞의 글, 130면)

받게 되면 처음에는 주저하는 반응이 있을지 모르나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조사 자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영상녹화에 대한 거부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⁶⁰⁾

3) 수사관들의 거부감

수사관들은 자신의 수사내용이 녹음 내지 녹화될 경우,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즉, 피의자에게 행하는 추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어느 정도의 고성이나, 거친 언어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수사의 녹음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녹음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에도 경찰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20여년이 지난 1979년도에 와서야 녹음조사에 대한 시험실시가 행해진 것⁶¹⁾에는 이러한 부분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직 큰 거부감은 없으나, 전면적 의무화를 실시할 경우, 같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모두 영상녹화나 녹음조사 방식에 대한 초기의 반대는 경찰들이 피의자의 허위진술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 제도의 수익자가 자신들임을 인식⁶²⁾하게 되면서부터, 현재는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보이지 않으며, 이런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들은

재인용.)

60) Thomas P. Sullivan, "Police Experiences with Recording Custodial Interrogations",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Center on Wrongful Convictions, 2004, p 20.

61) 탁희성·백광훈, 앞의 글, 70-71면.

62) 탁희성, 백광훈, 앞의 글, 71면.

피의자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과학적 수사를 통한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혐의를 밝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관행적 수사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 공판정에서의 우려점

1) 비디오 공판화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있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장시간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재현하는 것은 충실한 법정심리를 통한 생생한 심증형성이라는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고 소송이 지연되며, 비디오 상영재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⁶³⁾

하지만, 첫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상녹화물이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의 객관적 증명방법의 하나로 제시되는 경우⁶⁴⁾이고, 기억환기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경우로 한정⁶⁵⁾되어 있고, 둘째, 영상녹화의 의의는 시각적·음향적으로 무엇이 피조사자의 진술 혹은 자백을 이끌어냈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기존의 신문조서의 속독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적인 측면에서 시간도 절약될 것이라 판단되며,⁶⁶⁾ 기억환기와 탄핵증거로서의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면에 의한 조서확인을 통한 현재의 심리 방식보다는 훨씬 더 직접주의에 가까운 것이라 할 것이다.⁶⁷⁾

63) 참여연대,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백승민, 앞의 글, 19면 재인용.)

64) 형소법 제312조의 2항

65) 형소법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66) 백승민, 앞의 글, 19면.

67) 백승민, 앞의 글, 71면.

2) 법관 내지 배심원들에 대한 심증형성의 왜곡화 우려

피의자의 진술장면과 육성을 담고 있는 영상녹화물을 그대로 법정에서 재현할 경우,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지나치게 강한 인상을 남겨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⁶⁸⁾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 부여 등으로 해결가능하며, 무엇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확보된 다른 증거와 달리 유독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만 공판정 현출을 제한하여야 할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⁶⁹⁾ 오히려, 범행 직후 내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의 보여지는 포장되지 않은 피의자의 생생한 모습과 진술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있어 더 가치있다고 판단된다.

IV. 영상녹화제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

1. 운영 현실

가. 관련근거

현재 경찰의 영상녹화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⁷⁰⁾ 그

68) 참여연대, 앞의 글, (백승민, 앞의 글, 20면 재인용.)

69) 천진호, 앞의 글, 14면.

70) 형소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

규정을 두고 있고, 본조는 피의자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의 재량성 및 고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영상녹화물에 대한 원본 봉인 등의 처리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1조⁷¹⁾의 1항에서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녹화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법경찰관집무처리규칙 제18조의3(영상녹화)와 동 규칙 제18조의4(영상녹화물의 제작 등)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령 0710호, 2010. 07. 19. 일부개정]
<p>제18조의3 (영상녹화)</p> <p>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p> <p>③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p> <p>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p>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⑥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7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하 항은 생략)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법무부령 0710호, 2010. 07. 19. 일부개정]

⑦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외, 범죄수사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⁷²⁾에 영상녹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영상녹화 실행개관

경찰 수사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영상녹화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경제팀이나 강력팀의 수사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인지나 고소, 고발 등 다양한 수사단서로 인해 피의자나 고소인 또는 참고인이 수사관을 만나게 되면, 사건과 관련한 개략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사건관계인과 수사관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할지의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한다. 살인 등의 강력 사건의 경우 팀장이나 과장이 직접 영상녹화를 지시하기도 한다. 물론, 의무적 녹화

7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604호)’의 제73조에서 제79조까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531호)’의 제63조

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일정범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수사관은 진술녹화실로 피조사자와 동행하고, 모니터실에 비치된 영상녹화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특별로 배부된 보안 USB를 모니터실⁷³⁾에 있는 영상녹화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컴퓨터에 연결하여, 소속과 성명 등의 입력 사항을 입력하고 녹음 및 비디오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영상녹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피조사자와 함께 진술녹화실로 들어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 등의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범죄수사규칙 상의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하여 사건관계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 중에는 외부와의 연락 방법이 없고 다만 다른 수사관이나 팀장 등은 신문 내용이나 상황을 편면경을 통해 모니터실에서 볼 수 있다.

조사를 마치면, 수사관은 조서를 프린트하고 조서를 읽어 보게 피조사자에게 건넨 후, 추가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그리고, 수사관은 모니터실로 다시 나와 영상녹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 영상녹화물 CD를 만든다. 이로써 영상녹화 조사를 마친 수사관은 자신의 다른 조사실로 피조사자와 이동한 후, 피조사자에게 CD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날인을 통해 CD를 수사서류에 첨부하고, 작성된 2개의 CD를 사건송치시 전부 검찰로 보내게 된다.

다. 관리실태

영상녹화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각 수사지원실과 형사지원실(경찰

73) 영상녹화실로 들어가는 곳에 배치된 곳으로 영상녹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컴퓨터와 백업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

서 기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볼 때,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수기로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관리시스템이나 보관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⁷⁴⁾ 즉, 수사담당경찰관이 영상녹화실에서 영상녹화물을 작성하고 난 후, CD 2개를 작성하면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의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 일선의 입장이었다. 경찰로서는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상에 수기로 그 사용 및 CD 작성여부 등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제도도입 당시 원본을 보관하며 사본을 수사에 활용하려던 방안과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실무상의 문제점

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의 미비

영상녹화의 가장 큰 의의는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환경제공을 통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경찰의 영상녹화 관련 규정은 크게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필요적 사항만을 기술하여 놓은 측면이 강하며,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규정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다. 특히, 실무 차원에서의 운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우를 대비할 만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규정 간에도 적법성 확보를 위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74) 백업용 컴퓨터를 통해 영상녹화파일을 백업하고 있는 것이 전부.

3항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재생신청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범죄수사규칙 제79조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각 규칙이 제정 주체의 차이가 있어 상이할 수 있다하겠으나, 영상녹화에 대한 분산된 규정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그 법적 신뢰성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청이 2007년 본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서 작성한 ‘영상녹화제도 운영계획’을 보면 당시 ‘피의자 진술 녹음·녹화 지침’ 안이 만들어져 배포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는 규칙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그냥 일회성 지침으로 남고 말았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6. 6. 20 대검예규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대상 사건 및 녹화준비, 확인사항, 관리 등의 내용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⁷⁵⁾. 가장 초기 단계에서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전면적 녹음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Code of Practice E와 F 와 같은 국가 주도의 상세 지침을 만듦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중 조서 작성 문제

영상녹화제의 근본적 취지중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기존 서면 조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수사관은 진술자의 진술에 집중함으로써 조서 작성에 따르는 부담을 버리고 진술자의 표정, 시선의 이동, 몸짓 등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신문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에 있어 조서 의무작성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영상녹화제의 시범실시 후 얼마간

75) 검찰은 동 지침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2012. 11. 2.까지 동 규정에 대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지되었던 진술요약서 방식의 운용도 시범단계에서 멈추고,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조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현재 일부 사건⁷⁶⁾을 제외하고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영상녹화를 하게 되면, 서면조서를 작성하면서 영상녹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 서면조서 작성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법률신문에 기재된 수원지법 신용석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영상녹화물의 문제점”라는 기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고 있다.⁷⁷⁾⁷⁸⁾ 현재 일선 수사관들의 경우, 도입 초기 당시 ‘진술요약서’와 조서를 병행해서 작성해야 하던 입장에서 현재 조서를 작성하면서 녹화하는 방식이 오히려 업무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며 아예 익숙해진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의 근본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제도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다.

다. 관리 상의 문제점

경찰에서는 영상녹화 후에 작성한 영상녹화물 CD에 대하여 영상물관리대장 상에 기록한 후, 해당 일체서류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영상녹화물 CD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영상녹화물에 대한 사후 분석 등을 통한 피의

76) 아동이나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치 아니하고, 녹음녹화조사를 한 후 녹취서를 작성하고 있음.

77) “더욱 문제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捜査’를 하는 것이 아니라 ‘書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진술한다고 하여도 그 ‘진실’은 가려져야 할 것임에도 진술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 보이는 경우에도 수사관은 그냥 진술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타이핑만하고 있다.” www.lawtimes.co.kr/LawNews/, 법률신문, 2009. 6. 22.

78) 이윤, 수사절차상 訊問과정의 영상녹화 필요성과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태도, 한림법학 FORUM 제20권, 2009, 22면.

자의 진술분석에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자료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 당시 지적되었던 모니터 관리요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만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동하여 영상녹화실에서 개별 녹화를 할 뿐,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이가 없어 영상녹화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실과 함께 마련된 모니터실에는 아무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히, 강력범의 수사를 제외하고는 경제팀에서의 수사는 모니터실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이다.

제도 도입 당시인 2007년 경찰청은 원본은 피조사자의 면전에서 봉인 후 15년간 보존하고, 1부는 송치 및 수사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녹취에 대해서도 행정관을 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행되지는 못했다.

라. 수사관들의 인식

제도의 도입 당시와 전국 도입 실시 후 5년이 지난 지금, 일선 직원들이 영상녹화시스템에 느끼는 인식은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탄핵증거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조서 보다는 못한 소송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수사관련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많은 수사관들이 증거능력도 없는 녹화물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 반응이다.⁷⁹⁾ 또한, 형사소송법의 조서 작성의

무화에 따라,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조서를 만들어 간인 및 날인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일을 두 번 하게 되어 번거롭기 때문에 영상녹화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⁸⁰⁾ 거기에, 도입 후 실적거양 위주의 관리를 하다 보니, 충분한 공감대와 교육 없이 이루어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수사관들의 거부와 부담감도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수사연수소에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적평가를 하지말고 영상녹화가 필요한 사건위주로 녹화를 하자’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서작성을 생략하자’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⁸¹⁾

V. 영상녹화제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1. 녹음제의 전면 실시와 선별 영상녹화제의 도입

가. 의무적 녹음제 실시

영상녹화제도 가치는 신문과정의 투명화와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법상의 영상녹화 실시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량권 인정은 수사기관의 자백획득을 통한 증거확보라는 수사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사기관과 피의자(또는 피고인)라는 소송당사자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⁸²⁾ 따라서, 영상녹화가 수사

79) 이윤, 앞의 글, 21면.

80) 이윤, 위의 글, 21면.

81) 이윤, 위의 글, 33면.

기관에 의한 신문시의 위법여부에 대한 확실한 통제수단을 제공함과 아울러 공판정에서 수사관의 법정 증언시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요구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거나 영상녹화를 의무화해야 한다.⁸³⁾

앞서 언급하였듯, 영국은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의 제정을 통해 수사과정의 전면적 녹음제도를 실시하였다. 시범실시를 거친 후였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및 과정⁸⁴⁾을 거치면서 이 제도는 경찰관들의 지지 하에 정착할 수 있었고, 비디오 녹화방식은 2001년 실시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안정된 전면 녹음제도의 시행 이후, 녹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탄탄한 체계 속에 제도를 도입·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녹화제도만을 앞다투어 도입하였을 뿐, 비용적 측면이나 일선 경찰관들의 이용 측면에 있어 보다 용이할 수 있는 녹음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참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일선 수사관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수사경찰관들 중 경제사범을 담당하는 부서의 수사관들은 대다수가 특히, 녹화까지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는 2006년 실시된 양천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82) 박노섭, “개정형사소송법상 조서제관위험성에 대한 소고”, 경찰학연구, 경찰대학교, 2007, 14-15면.

83) Westling & Way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Summer 1998, kp 53. (박노섭, 앞의 글, 15면 재인용.)

84) 자세한 내용은, 탁희성·백광훈, 앞의 글, 75-776면 참조.

〈표 1〉 녹음·녹화제가 가장 적합한 범죄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비율(%)	빈도(명)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67.9	36
지능범(사기, 횡령, 배임 등)	3.8	2
지능범(사기, 횡령, 배임 등)	18.9	10
풍속범	0	0
절도	1.9	1
교통사고	3.8	2
기타 특별법범	3.8	2
합계	100	53

(출처: 나영민·박노섭,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6-07, 132면)

현재 일선의 영상녹화 제도의 활용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 조사시에 가장 유용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성폭력이나 아동 대상 범죄 등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경제분야 수사에 있어서는 주로 자백하는 간단한 사건이나 피해자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⁸⁵⁾이다.

따라서, 수사, 형사, 교통의 모든 수사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녹음을 의무화하고 ‘진술녹화실’을 이용한 영상녹화의 경우는 강력범죄 중 일부 범죄를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 재량에 맡겨 영상 녹화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녹음제의 전면적 실시는, 이미 발달되어있는 녹음장비의 성능으로 볼 때, 조사관의 자리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그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

85) 2009년 경찰청 주관 현장점검에 의하면, 실적거양을 위해 녹화필요성이 적은 단순 사건을 영상녹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 사용을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만, 중요한 것은 녹음장비 및 그 자료의 저장 및 관리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합형사사법시스템(KICS) 상에서 실시간 녹음 및 백업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녹음방식은 별도의 조사실로 옮기거나, 복잡한 준비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수사관의 자리에서 실시되게 함으로써 절차적 번거러움 또한 덜 할 것이다.

나. 녹화 대상범죄에 대한 고찰

현재 영상녹화 관련 대상범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찰청의 지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2> 영상녹화 대상범죄

구분	죄명	기타사항
녹화필수범죄	살인, 강간(성폭력, 청소년성보호), 증수죄, 공직선거등 선거사범	그 밖에 주요범죄대상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진술변복·민원야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급적 실시
주요범죄	강도, 절도, 마약, 사기, 횡령, 배임	

(출처 : 경찰청 내부문서)

이는 형소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기본틀에서, 경찰청이 2007년 ‘진술녹화제도’를 실시하면서 주요지침으로 정한 녹음·녹화대상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것이라 판단된다.

영상녹화 조사 방식의 의무적 적용대상에 대한 고찰을 함에 있어, 먼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의무적 영상녹화의 대상은 각 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각 주의 법률 및 판례법은 피의자신문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Electronic Recording/Recordation)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녹음만으로도 무방하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대상은 구금상태하(Under Custody or custodial)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시설(Place of Detention)에서 행해지는 신문과정⁸⁶⁾의 전부이다. ⁸⁷⁾

의무적 전자기록(녹음 내지 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주마다 다르다. 대상범죄를 기준으로 볼 때, 1)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주(미네소타주, 메사추세츠주, 텍사스 주), 2) 중요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주(알래스카주, 메인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워싱턴특별구), 3)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리노이주 : 살인관련범죄, 위스콘신주 : 소년범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주의 경우에도 경죄(Misdemeanor)의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녹음, 녹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중범죄 사건이라고 한다.⁸⁸⁾

영국의 경우는, 녹음, 녹화에 대한 규정인 Code of Practice E(이하 Code E로 약칭)와 F의 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디오 녹화에 관해 규정한 Code F는 Code E의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먼저 의무적 녹음에 대해 규정한 Code E를 살펴보고 난 후, Code F를 검토하겠다.

테이프 녹음될 조사는 The Terrorism Act 2000 의 제41조에 의해 체포된 자나 그 법의 Sch 7.에 의해 구금된 자의 경우를 제외⁸⁹⁾하고는,

86) Custodial Interrogation 의 의미에 대해 Illinois 주법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를 받는 보편적 이성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구금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고 둘째, 합리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질문이 유죄를 인정할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체포의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구금상태의 조사(Custodial Interrogation)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 Illinois law(SB15) 725 ILCS 5/103-2.1(a)

87) 신동운, “각국의 영상녹화물 활용실태를 중심으로 한 법정에서의 영상녹화물 활용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09, 29면.

88) 신동운, 앞의 글, 30면.

공판에 회부될 범죄를 포함한 기소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Code C의 권리고지를 받은 자(person)에 대하여 이루어진다.⁹⁰⁾ 또한, 입건되거나, 기소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은 후⁹¹⁾의 용의자에 대하여 조사관이 해당 범죄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⁹²⁾ 또는 사건 관련 다른 사람의 조사나 서면진술에 대해 고지해주기를 원하는 때⁹³⁾에 해당하는 조사(interview)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비디오 녹화대상에 대한 Code F를 살펴보면,(규정상 앞의 규정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한다.) 녹화 대상 규정 첫 조항에 의무적이 아닌 녹화가 적절할(might be appropriate) 영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⁹⁴⁾ 특이한 점은 Code E와 달리 기소될 범죄의 Suspect(용의자)에 대해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⁹⁵⁾이며, 농아, 농아/맹인, 언어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⁹⁶⁾와, 신뢰관계인을 동석해야만 하는 자⁹⁷⁾, 그리고 용의자나 그 대리인이 비디오 녹화를 요구하는 모든 경우⁹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89) Code of Practice E 3.2

90) Code E 3.1

91) 영국의 수사제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건이 되거나 기소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한 신문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건 후에 피의자로 명명하며 심문을 하는 것과는 입건의 개념이 상이하다 하겠다. 신문담당경찰관이 Interview(조사 : 대상자를 상대로 정보를 취하는 과정)를 통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조사자를 구금담당관(Custody officer)에게 인계하면 구금담당관이 피의자의 입건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표창원외 4인, 비교수사제도론, 422면 참조.

92) Code E 3.1(b) 이 경우, 상세규정을 Code C 16.5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중(公衆)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질 해악이나 손실 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 2) 이전 답변이나 진술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경우, 3) 구금피의자를 위한 공평의 견지에서, 입건이나 기소 고지 후의 밝혀진 범죄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

93) Code E 3.1(c)

94) Code F 3.1

95) Code F 3.1(a)

96) Code F 3.1(d)

97) Code F 3.1(e)

98) Code F 3.1(f), 이와 관련,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본래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피의자

미국의 경우 그 도입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거나 적어도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고, 수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 영상녹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⁹⁹⁾ 우리도 전면적 녹음제를 시행할 경우, 영상녹화는 비디오 촬영이 필요한 부분에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면 족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현재와 같이 녹화에 대한 재량에 의해 실시하는 상태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무적 전면 녹음제의 단계적 실시와 함께, 선별적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대상범죄에 대하여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의견과 학계 및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영상녹화제에 대한 지침 등의 제정

가. 단계별·상황별 지침

영상녹화 처리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가장 체계적이며 내용 구성이 풍부한 영국경찰의 Code of Practice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따른 규정의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Code of Practice 는 경찰 및 형사증거법(PACE: The Police

의 요청에 의한 영상녹화의 실시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99) 녹화에 해당하는 Code F 3.1의 규정을 보면 “if and interviewing officer decides to make a visual recording there are the areas where it might be appropriate”로 규정되어 있고, 반면 녹음에 해당하는 Code E 3.1 은 “tape recording shall be used at police station for any interview”라고 규정되어 있음

and Criminal Evidence Act) Sec 60(1)에 의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테이프로 기록하는 실무규범을 발할 의무를 지도 록 규정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¹⁰⁰⁾ 2001년 제정된 Code F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Code of Practice F 의 개관

순번	내용
1	총칙(General) : 용어 및 규정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
2	원본 녹화물의 녹음과 봉인(Recording and sealing of master recordings) : 녹화 장치의 기준, 원본 봉인 기준 및 사본, 신원 비공개 경우 규정
3	비디오 녹화 조사 대상(Interviews to be visually recorded) : 조사대상, 테러법(2000) 별도 규정성, 비녹화시의 구금담당관의 관리
4	조사(The Interview) : 총칙, 조사의 개시, 농아자 조사, 용의자의 반대와 의의, 테이프의 교체, 조사 중 휴식, 녹화장비의 오류, 테이프의 제거, 조사의 종료
5	조사 후의 조치(After the Interview)
6	원본 복사관련 보안지침(Master Copy Security) : 총칙, 형사절차 진행을 위한 원본 봉인 제거, 그 외의 봉인 제거 경우, 그에 따른 기록
7	보안디지털네트워크에 의한 영상녹화(Visual Recording of Interview by Secure Digital Network)

(출처 : Code of Practice F,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2001)

이 규정은 수사단계의 처리절차에 따른 규정과 관리 측면에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각 항목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항목마다 ‘Note for guidance’를 통해 다른 규정(ex, Code C)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상황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100) 탁희성·백광훈, 앞의 글, 77면.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토대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영상녹화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위법적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규정해야 할 부분을 그 단계별·상황별 요소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단계별 요소와 관련 조사의 개시 단계와 조사 중의 조치, 그리고 조사 후의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의 개시에 있어서는 녹음 및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¹⁰¹⁾와 조사를 하는 자의 신분을 밝히고, 조사를 받는 자 및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녹화의 시작 시간과 일자 그리고 녹화물의 향후 사용과 관련한 조치들에 대해 통지 받을 것이라는 내용, 녹화를 하기 전의 회유나 강압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 피의자의 경우 진술거부권 등의 절차적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한 후,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중의 휴식으로 녹화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휴식실시 사실 자체에 대한 녹화를 하고, 정전이나 장비의 고장 등 기타의 사유로 녹화가 중지된 경우에는, 조사 재개시 발생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사이 회유나 강압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법적 권리에 대한 재고지 등 조사 개시시와 동일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이를 녹음·녹화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난 후, 피조사자의 면전에서 녹화물을 생성하고 그 면전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¹⁰²⁾ 할 것이며,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¹⁰³⁾ 또

101) 물론 피의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10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2항. 현재, 영상녹화물의 CD 생성을 위한 기기들이 조사실이 아닌 모니터실에 설치되어 있어, 그 면전에서 원본을 작성하기 어려운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0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3항, 이와 관련 양식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 피조사자에게 앞으로 녹화물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 것과 그 내용물에 대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의 처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영상녹화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 규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적정한 규정이 없이 수사관의 재량으로 임의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영상녹화가 된 조사라 하더라도 그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의무적 녹화대상으로 규정한 범위에 있어 피의자가 녹화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재량에 의해 녹화를 하고 있기에 서면조사 방식의 조사를 하면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공판정 등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그로 인한 조사에서 얻게 된 자백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적 녹화 대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의 기준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이는 진술거부권에 따르더라도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왜 녹화를 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Code of Practice에 상세한 관련 규정을 둬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Code F

4. 8

피의자가 영상녹화 조사 개시시나 조사 중, 또는 휴식 중에 녹화를 반대할 경우, 조사관은 조사가 녹화 중에 있다는 사실과, 규정에 따라 피의자가 녹화

에 반대하는 모습을 촬영해야 한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설명해야만 한다. 반대에 대한 녹화가 이루어졌거나 피의자가 반대의 모습이 녹화되는 것을 거부했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녹화기의 전원을 끈다. 만약 분리된 오디오 장치에 의한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면 수사관은 녹화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녹음할 것을 물어보아야만 한다. 녹음에 의한 조사까지 거부할 경우 수사관은 Code E 4.8 조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난후 수사관은 서면조사 방식의 조사를 실시한다. 만일 조사관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비디오 녹화 조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녹화할 수도 있다.¹⁰⁴⁾

4. 9

피의자나, 그 대변인에 의해 조사도중 불만이 제기되면, Code C 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구금담당관(Custody officer)에게 보고한다.¹⁰⁵⁾

4. 10

피의자가 자신과 관련된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에게 대해 조사관에게 말하자고 하고 그것에 대해 녹화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수사관은 공식적인 조사가 종결된 후 그 문제들에게 대해 수사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반대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원할 경우, 물론 수사관의 재량에 의해 녹화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인권보호의 측면과 수사의 신뢰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서 의무적으로 녹화를 실시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참여에 따른 규정과 농아자, 맹인 등의 신체적 어

104) 이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녹화를 한 결정이 공판정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Code F Notes for Guidance 4G.

105) 이 경우, 구금담당관은 즉시 호출되어 불만을 처리하고, 가능한 한 구금담당관이 도착해서 방에 들어오고 피조사자와 대화를 나누기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도록 한다. 그리고 Code C에 의한 확인관(Inspector)의 조치가 있기까지 조사를 계속할지 내지 종료할지의 결정은 담당 조사관의 재량에 따른다. Code F Notes for Guidance 4B
피의자가 제기한 불만이 Code C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때, 수사관은 그 불만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후 구금담당관에게 즉시 고지하여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피의자에게 해주어야 한다. 조사완료 후 수사관은 구금담당관에게 반드시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Note for Guidance 4C.

려움이 있는 자나, 정신지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의 조사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비의 고장이나 정전 등의 특이 상황으로 인한 녹화문제 발생시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길 절차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상황에 대해 특히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할 영국의 구금담당관(Custody Officer)과 같은 수사통제자의 역할을 할 자를 지정¹⁰⁶⁾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중재자의 존재는 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의혹을 단지 영상녹화의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¹⁰⁷⁾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이 재량에 의한 영상녹화의 실시 단계에 있어서는 서면조사 도중에 녹화에 대한 필요성 내지 피의자의 요구로 인한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고, 영상녹화 개시 시에 녹화가 있기 전의 조사사항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녹화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나. 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시스템 마련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이를 관리할 인적, 물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인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절차 규정상의 영국제도에서 볼

106) 나영민·박노섭, 앞의 글, 105면.

107)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1항.

수 있는 구금담당관(Custody Offic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사부서 이외의 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영상녹화와 관련한 문제상황 발생시에 이의 사실을 객관적 입장에서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자를 두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수사통제자로서 청문감사관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의자신문 과정 뿐만 아니라 피의자 체포시부터 유치장 입출감 등 수사 전(全) 과정에 대하여 통제하고 이러한 수사과정을 담당수사관이 아닌 인권보호관이 기록·확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⁰⁸⁾

현재 경찰 작성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여 수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분명 작성 주체가 다르므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보관하고 원본 개봉의 필요시 영국의 경우와 같이¹⁰⁹⁾ 검찰 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고, 이때 피의자나 그의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상녹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모니터실에서 피의자의 영상녹화를 실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수사관이 안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하는 것을 밖에서 지켜볼 뿐, 실시간으로 추가 질문해야 할 사항을 수사지휘관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¹⁰⁾ 예를 들어, 모니터실에서 지시사항을 문자로 입력하면 조사실 내에 있는 수사관이 이를 보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08) 나영민, “선진 수사제도 연구 학술 세미나” 관련 제2주제 토론문, 경찰청(수사구조개혁팀), 선진수사제도연구회, 2010, 75면.

109) Code F 6.2 이 경우도, 6.2부터 6.7항까지 만약에 있을 상황에 대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0) 현재,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의 진술에 의하면, 종이 쪽지에 지시사항을 적어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 건네주고 있다고 하나, 이는 피의자에게 심리적 장애요인 등이 되어 오히려 진술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3. 조서 작성 방식에 대한 개선

가. 진술요약서 방식의 필요

앞서 언급하였던, 이중 조서 작성의 문제는 사실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영상녹화를 하는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은 녹음 내지 영상녹화의 수사를 통해 피조사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피조사자의 행동과 표정 등을 관찰하며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조서 작성 규정을 폐지하고, 녹음된 자료를 서면조서에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공판정에서는 조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며 다른 증거들을 놓고 다투는 것이 가장 공판중심주의다운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형태를 약식화(이하 ‘진술요약서’로 칭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면적 녹음제를 실시하는 영국의 경우를 소개하면, 조사내용에 대한 진술요약서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¹¹¹⁾

① Short Descriptive Note(S.D.N)

전반적인 조사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요약보고서로 범위가 복잡하지 않고, 피의자가 자백하고, 증거 관계가 명백하여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1차 기일

111) 이윤, “경찰수사절차상 진술 녹음·녹화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53면.

(first hearing)에 그치는 사건에 사용된다.

② Record of Tape-recorded Interview(R.O.T.I)

시간대별로 질문과 대답의 취지를 요지 형태로 기술하고 필요하면 문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좀 더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사용된다.

③ Contemporaneous Note

대화내용 전체를 한마디 빠짐없이 녹취한 것이다. 이는 진술이 복잡하고 반대의 증거들이 발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우리의 경우도, 기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또는 자백하는 단순한 사건의 경우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간단한 진술 취지 등을 기재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사안이 다소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 등은 범죄의 요지와 사건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들을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구성하면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이용하고, 반드시 피의자의 전체 진술이 기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녹취사를 통해 녹취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운용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관간 공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위에서 언급한 방식의 운용을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간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만들고, 이의 숙달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005년 시범실시 당시, 시범실시 기관이었던 서울 양천서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면 ‘피의자신문수사보고서’라는 진술요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었다. 하지만 그 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실제적인 피의자신

문 시간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피의자신문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커 조서 작성방식에 비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51.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당시 피의자신문보고서와 관련하여 검찰은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경찰은 업무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영상녹화 횟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¹¹²⁾

검찰과 경찰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피의자신문수사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이유는 두 기관이 상호협약하고 지원하는 업무방식이 아닌 지휘감독과 복종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갈등관계와 함께 뿌리 깊은 조서방식의 관행에 대한 기관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오는 문제라고 판단된다.¹¹³⁾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의 주도하에 1984년 5개 경찰기관 내 6개 지역에서 피의자신문 녹음제도의 시범실시를 한 후, 2년간의 치밀한 성과분석을 거쳤고, 국가테이프녹음 추진위원회(the National Tape-Recording Steering Committee)가 설치되어 사업을 주도하였고, 지방에는 각 지역단위 위원회가 설치되어 법학회, 변호사회, 연방경찰, 경찰협회, 검찰, 법원 등 각계 인사의 참여와 지방법원 판사가 의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내무부 연구 기획단(the Home Office Research and Planning Unit)은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개별사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법절차, 경찰수사과정 및 검사의 작업량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⁴⁾

112) 나영민·박노섭, 앞의 글, 164-165면.

113) 나영민·박노섭, 앞의 글, 165면. : 형사소송법의 개정 당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조서재판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실무편의를 위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노섭, “개정형사소송법상 조서재판위험성에 대한 소고”, 경찰학연구, 경찰대학교, 2007, 5-6면), 즉 법원 또한 조서를 통한 업무방식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추구했던 것이라 보인다.

114) 수사과학연구회 자료집,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운영실태 보고”, 법무연수원, 2003, 11면.

우리도 경찰, 검찰, 법원은 물론 학계의 참여하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상호협력하고, 이와 관련된 심도있는 연구를 시행하는 한편, 단계적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4. 수사관 교육 및 연구개발

가. 영상녹화 및 신문기법의 교육필요

영상녹화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이다. 교육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영상녹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과 둘째, 영상녹화 관련 진술요약서 작성을 위한 교육, 셋째, 수사관들의 신문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우선, 일선 수사관들의 대부분은 진술녹화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 없이, 시행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대한 이해 없이 실무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서 작성 병행 등의 업무적 부담 속에 실적거양을 위해 영상녹화를 실시하게 되면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서의 수사팀장들을 상대로 제도의 필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교육과 병행하여 영상녹화에 따른 진술요약서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진술요약서에 대한 각 기관간의 합의 등을 통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녹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피의자의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행동분석, 진술분석, 얼굴미세표정분석

등에 대한 교육과 신문을 위한 기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기법에 대한 교육은, 현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2주 과정으로 경감 이하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5명으로 연 5회를 실시하여 연 170명 가량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행동분석이나 진술분석, 얼굴미세표정분석 같은 영상녹화 관련 교육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영상녹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¹¹⁵⁾

나. 영상녹화 관련 연구활동의 필요

영상녹화제 실시 후 5년이 지났지만, 영상녹화물을 활용한 연구활동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해 영상녹화제의 장단점 분석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피의자 조사에 대한 모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84년 PACE Act를 통해 전면적 녹음제 도입 후, Baldwin, Williamson 등은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한 녹음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연구활동을 하였고, 이런 연구결과가 축적되는 동안 영국 내무성은 정부와 ACPO¹¹⁶⁾는 공동작업을 통해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의 기본 원칙(Principles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을 발표하게 되고,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표준적인 조사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용 소책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PEACE 모델이

115) 이윤, “수사절차상 訊問과정의 영상녹화 필요성과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태도”, 한림법학 FORUM 제20권, 2009, 34면.

116)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약자로 경찰최고 책임자 협의회로 불수 있으며, 영국 43개 지역 경찰간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할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김종률, 앞의 글, 12면.

다.¹¹⁷⁾ 이후, PEACE 모델의 효과에 대하여 1999년 Clarke와 Milne가 177건의 피의자 조사사례를 토대로 분석하여 수사관의 조사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등 영국에서는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영상녹화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조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실증적이고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VI. 결론

이제까지 경찰 영상녹화제도의 도입과정과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그 가치를 짚어보고,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절차에 따른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2007년도에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된 후 5년에 이르지만 아직까지도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도 그 활용가능성에 제동을 걸어놓아 제도의 안착을 가져오기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형사사법 기관 간의 이익구조에 따른 다툼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었는지 간에, 영상녹화제도는 분명 공정한 수사를 지향하는 우리 형사정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117) 김종률, 앞의 글, 16-17면.

2012년이 되면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면, 이제까지 판사가 조서를 보면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조서재판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직접 피고인에게 혐의를 신문하고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죄를 판단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검찰이던 경찰이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지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영상녹화 방식의 조사는 앞으로 공판주의가 전면 시행되면서, 왜곡되지 않은 진술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통해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그 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판정에서의 경찰 영상녹화물의 사용가치를 인정받고 수사방식의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녹화의 규정을 마련하고, 의무적 녹음제를 시행 하는 등 내실 있게 관련 제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형사정책의 투명화와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요소가 될 영상녹화제의 가치를 경찰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수사과, “선진외국의 진술녹화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07.
- 김현숙,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종률, “검찰수사역량강화 방안 - 검찰수사관의 수사 교육·평가·자격제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연수원, 2008.
- 나영민·박노섭,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6-07.
- 나영민, “선진 수사제도 연구 학술 세미나” 관련 제2주제 토론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선진수사제도연구회, 2010
- 박노섭, “개정형사소송법상 조서재판위험성에 대한 소고”, 경찰학연구, 경찰대학교, 2007.
- 박노섭,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 박노섭·이웅혁, “수사절차상 진술녹화제 도입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5.
- 백승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07.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수사과학연구회 자료집,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운영실태 보고”, 법무연수원, 2003,

- 이기수, “경찰관 법정증언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 이동희,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2007 가을, 통권 제3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7.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호, 대검찰청, 2007.
- 이윤, 수사절차상 訊問과정의 영상녹화 필요성과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태도, 한림법학 FORUM 제20권, 2009,
- 이윤, “경찰수사절차상 진술 녹음·녹화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천진호,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입법연혁적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협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2009.
- 참여연대,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5.
- 탁희성·백광훈, “수사상 녹음·녹화자료의 증거능력 부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용역과제, 2003.
- 표창원의 4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 하태훈, “미국 수사 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05,

2. 외국문헌

Thomas P. Sullivan, "RECORDING FEDERAL CUSTODIAL INTERVIEWS",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2008,

Thomas P. Sullivan, "Police Experiences with Recording Custodial Interrogations",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Center on Wrongful Convictions, 2004,

Thomas P. Sullivan, "Electronic Recording of Custodial Interrogations : Everybody Win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05.

3. 기타 자료

법무부,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물 증거로 인정 추진, 중앙일보.

Code of Practice E·F,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2001.

진술녹화제도 운영계획, 경찰청 수사국, 2007.

신용석, “형사재판 영상녹화물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9.

책임연구보고서 2011-15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경찰 영상녹화제의 재조명과 개선방안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